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- 다만,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0제6항 및 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,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	성명 주소(거소)	생년월일			
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					
1.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전·후 체납액 및 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(가산금)					
순서	세목	납부번호	특례 적용 전 체납액(①)	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 (②=①-③)	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 (가산금)(③)
계				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2.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					
순서	세목	납부번호	징수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(②)	분납 승인 체납액(④=②-⑤)	분납 적용 제외 체납액(⑤)
계				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※ 분납 적용 제외 체납액(⑤)은 분납승인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(가산금)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					
3. 징수특례 적용(분납승인 체납액)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(※ 별지 상세목록 참고)					
분납기간	분납 횟수	분납 허용 내 국세·농특세	매월 납부할 금액		
			차수	납부기간	분납할 금액

발신명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
주 소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/ 홈페이지 주소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전화() 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[별지] 징수특례 적용 후 분납일자별 납부할 금액 상세 목록

(단위 : 원)

분납 대상 체납액			납부할 금액			
세목 (납부번호)	납부기한	금액	분납횟수	분납기간	분납세액	국세계좌
안 내 말 씀						

1. 횟수별 납부할 금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-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않은 경우 징수특례[납부지연가산세(가산금) 면제 및 분납 허용]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2 분납(징수특례) 대상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(기준일 이후 체납액 및 가산금·납부지연가산세만 남아있는 체납액 등)에는 매일 납부지연가산세*가 부과되며,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납부의무성립일이 ' 19.12.31. 이전인 경우 매월 가산금 부과

3 국세계좌 납부 안내

- 국세계좌는 이체은행을 "국세"로 선택하시면 거래은행과 무관하게 납부 가능합니다.(인터넷전문은행, 증권사 제외)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

귀하께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
 월 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
징수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.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소 또는 거소			
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내용				
세목	납부번호	납부기한	체납액(원)	
계				
체납액 납부의무 징수특례 심의결과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	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	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	서명
협조자								
우	주소		/ 홈페이지 주소					
전화()	전송()	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비공개					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								